

운/전/자/를/위/한/차/량/정/보

##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상계 적용기준

최근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, 누가 잘했고, 누가 잘못했다는 운전자 끼리 또는 보행자와의 싸움은 흔히 볼 수 있는 관경이다. 교통사고는 어느 일방에서 잘못 했다기보다 쌍방 과실의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적인 과실 상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.

### 기. 만 6세 미만 어린아이(유아)의 교통사고

구 분	피해자과실	비 고
간선도로상	20~40%	간선도로란 도로폭이 14m 이상, 왕복 4차선이상,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일반 도로상
일반도로상	10~30%	일반도로란 주택·상점가 도로, 일반도로, 아파트 내 도로

#### « 보호자 자녀감호 태만 과실 »

만 6세 이하 어린아이(유아)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, 피해자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인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평소 차량 등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부모 등 보호 감독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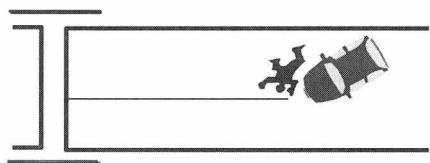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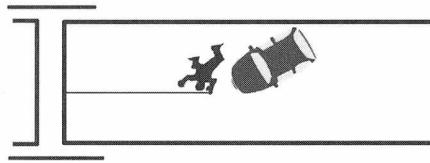
단, 집안 담장 밑에서 놀고 있는데 차량이 담장을 충돌하여 그 충돌로 담당이 무너지면서 다친 경우 등은 불가피한 사고로 보아 그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, 횡단보도를 부모 손을 잡고 건널 경우에도 그 과실을 물을 수 없다.(부모의 횡단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적용)

### 나. 육교 밑 (지하도 부근) 횡단

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

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.(심야에 지하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)

구 분	피해자과실	비 고
육교밑(지하도) 에서 20m 이내	50~80%	① 야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, 오르막의 정상부근, 육교 바로 아래 등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치 적용한다.
육교밑(지하도) 에서 20m 초과	30~60%	② 피해자가 신체부자유자, 아동, 노인 등의 경우 최저치 적용한다.(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)



### 다. 철책 설치지역 횡단(피해자과실 : 40~60%)

인도가 없는 곳, 차량통행이 많은 곳, 기타 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 최고치 적용한다.

## 리.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사고(피해자과실 : 과실 면책)

원칙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사고는 면책(보험처리를 하지 않음)이다. 그러나 도로작업 인부, 청소원 등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50~80%가 적용된다.

## 미. 이륜차 탑승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(피해자과실 : 20~30%)

이륜차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, 두부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, 기타 탑승인이 두부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20%를 적용한다.

## 비.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(피해자과실 : 20~30%)

고속버스, 시외 직행버스 등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.

## 서.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 중 사고의 경우

구 분	피해자과실	비 고
화물차의 적재 함에 탑승 한 경우	20~40%	간선도로,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및 시간인 경우 적재함 또는 화물위에 탑승해 있거나 적재함에서 음주·기무 등을 한 경우 최고치를 적용한다.
경운기의 적재 함에 탑승 한 경우	10~20%	

## 아. 달리는 차에 매달려 기다 주목한 사고

구 분	피해자과실	비 고
버스의 경우	20~30%	① 운전자의 후시경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. ② 운전자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기본과실 적용한다. ③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치를 적용한다.
화물차의 경우	30~60%	

## 자. 출발신호 후 갑자기 뛰어 내린 경우(피해자과실 : 30~60%)

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뛰어 내린 경우 등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최고치를 적용한다.

## 치. 차량 밑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(잠자는 행위 포함)(피해자과실 : 15~25%)

차량 밑에서 잠자는 경우나 차량 밑에서 유희 등을 한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.

## 키. 도로에 누운 행위(피해자과실 : 50~70%)



밤에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. 따라서 야간, 간선, 일반도로에서 만취상태 등인 경우 최고치를 적용하며, 운전자의 중과실(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)인 경우에는 사안을 감안하여 감산적용한다.

## 터.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(피해자과실 : 보통 10~30%, 음주시 20~50%)

도로가에서 2m 정도 도로 중앙으로 진입한 경우 등은 최고치를 적용한다.

## 파. 승용차 또는 화물차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(피해자과실 : 10~20%)

